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7호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친환경적인 우리 밀·콩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는 등 우리 밀·콩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다.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라. 생산비, 생산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마. 소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2월 22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밀·콩”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우리 밀·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생산자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밀·콩 가공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리 밀·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

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생산단체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비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교육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우리 밀·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우리 밀·콩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우리 밀 ·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

관련법령

□ 『밀산업 육성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
6.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7.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